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14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를 "제13조제2항 본문·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벌칙) <u>제13조를</u> 위반한 자	제55조(벌칙) <u>제13조제1항을</u>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3조제2항 단서</u> 및 제3항,	② <u>제13조제2항 본문·단서</u>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	
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	
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	
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